

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 선고 2017나11513,2017나11520 판결 [2017나11513(반소)

공동불법해위에 기한 내부분담청구등
2017나11520(반소) 구상금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 선고 2017나11513, 2017나11520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7. 6. 9 선고 2016가단8571, 2017가단52353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.6.9.선고 2016가단8571(본소), 2017가단52353(반소) 판결

변론종결 2017.12.6.

판결선고 2018.1.10.

주 문

- 1.원고(반소피고) 및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2.항소비용은 각자부담한다.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- 1.청구취지

[본소]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50,698,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8.2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제주지방법원 2015나5637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25,652,787원에 관하여 17,956,950원 및 이에 대한 2016.6.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에 대한 면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[반소]

원고는 피고에게 25,652,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6.1.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 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원고: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3,002,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8.20.부터 2017.6.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:제1심판결의 본소,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본소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내지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 사 김 판 사 채 판 사 성